

 한국농어촌공사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일시	2022. 4. 27(수) 15:00	배포일시	2022. 4. 27(수) 15:00
담당부서	농지은행처 농지연금부	책임자	부장 이주헌(061-338-5901)
		담당자	대리 이석원(061-338-5907)

노후보장 든든하게...농지연금 가입 2만건 돌파

- 지속적인 수요자 중심 제도개선으로 농업인의 노후생활지킴이 역할 톡톡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이 가입 2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만 번째 가입자는 경기도 가평에 사는 김광식씨(64세)로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해 초기 10년간은 월 234만 원을, 이후부터는 매월 164만 원을 받게 된다.

연금 수령과 함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도 있지만 김씨는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리기로 했다.

이날 경기지역본부 연천·포천·가평지사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김씨는 “시기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라서 초반에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했다”며 “연금 가입 나이가 조정되면서 일찍부터 생활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게 돼서 든든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지연금은 '11년 도입 이래 지금까지 9,057억을 집행하였으며, 가입자 월 평균 지급액은 97만원('22년3월기준)으로 시행 초부터 꾸준히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해오고 있다.

실제 농지연금은 도입 이래 연평균 2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4년 동안 가입자가 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두 배 성장했다.

이는 농지연금은 국가가 실시하는 제도로 부부 모두 평생 보장받을 수 있고, 담보농지는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안정적 노후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6억 원 이하까지는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고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급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데다가 저소득층과 장기영농인 우대형 상품이 출시되는 등 지속적인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 또한 인기 비결로 풀이된다.

강경학 농지관리이사는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더 좋은 혜택으로 농지연금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면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가입 문의는 전화(1577-7770), 농지은행 누리집(www.fplove.or.kr)이나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가능하다.

- (사업목적)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11년~)

* 지원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 및 제24조의5

- (가입조건)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 (상품유형) 종신형(사망 시까지 지급)과 기간형(5, 10, 15년) 운영

구분	지급방식	상 품 내 용
종신형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금액 지급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적게 지급
	수시인출형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 (70% 매월 정액 지급)
기간형 (5,10,15년)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 지급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만료후 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이 지급

- (월지급금)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월지급금이 결정되며 월 3백만원(담보물 한도 없음)으로 상한액을 제한

- (담보물 평가율) 개별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 (연금해지) 언제든지 채무상환(지급총액+이자율+위험부담금)* 후 해지 가능

- (상환) 채무 미상환시 담보농지 임의경매 실행 → 담보농지 처분금액으로 연금 채권을 회수하고 잔여금액은 가입자(상속인)에게 배당

* 이자율(고정 2%, 변동 0.8%), 위험부담금(0.5%)

- (기타) 담보농지 활용* 및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연금승계 가능

* 직접 경작 또는 임대를 통해 연금 외 추가적인 소득 창출 가능

※ 사업추진 절차

